



서울특별시

▶ AI 발병 종료시까지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서울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라도에 이어 경기도 평택까지 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AI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이번에 특별 관리되는 대상은 주요 가금류(닭·오리) 2종과 기타 가금류(거위·칠면조·꿩·메추리·타조) 5종 등 총 7종이다.

먼저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청 담당직원이 주 1회 사육주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AI 예방요령'을 집중 교육하고 의심동물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또 서울외곽농촌지역(서초·강남·구로)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 3개팀이 소독지원반을 꾸려 주 1회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작업을 지원하고,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 사육농가에서 자율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권용하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AI 발병 가능성이 있는 조류에 대한 신규 사육 행위는 자제하고, 현재 사육중인 가금류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사육시설 소독을 실시해 AI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AI 발생 지역은 당분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C에서 30분, 75°C에서 5분, 80°C에서 1분간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및 환자 발생사례는 아직 없다.

경기도

▶ AI 발생, 개인위생 준수 당부

안성시보건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잘 감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 감염된 사람들은 주로 감염된 생닭이나 생오리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이며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경구를 통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위장 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도 하고, 75°C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먹어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안성시는 호흡기 질환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환기를 자주 시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하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할 것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21~5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

▶▶ 천안시, AI·구제역농가에 세제 혜택

천안시는 AI·구제역으로 닭, 오리, 소, 돼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해 2011년도 재산세가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2010년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도 가능)로 납기가 연장된다.

부산광역시

▶▶ 부산銀, 구제역·AI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부산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과 AI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축산농가 등을 위해 2월 7일부터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100억원 한도의 경영안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신용도와 피해현황 등을 감안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5%대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또 대출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최장 1년간 만기연장하고, 분할상환금도 최장 1년간 상환유예한다.

이번 특별지원 대상에는 구제역과 AI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뿐 아니라 치킨점이나 삼계탕 식당 등 판매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유통·판매업종 등도 포함된다.

지원절차도 별도의 피해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산은행의 해당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신속하게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밖에 돼지고기나 닭, 오리 등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해 축산물 및 가공류 먹기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경렬 부장은 "이번 조치로 대출금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 유예 대상은 모두 1천845개 업체에 1천800억원에 달한다"며 "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축산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 상주, 아파트 500m·주택 100m이내 가축 사육 제한

상주시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상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7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주시의 이번 축사 신축 제한 조치는 가축 사육시설을 인구밀집지역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



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성하동·인봉동·서성동·남성동·성동동·복룡동·냉림동·서문동·무양동·신봉동·낙양동 일부(제방안)·화개동 일부(제방안)·인평동 일부(제방안)·흥각동 일부(제방안)·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5가구 이상의 인가(주택) 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단 돼지·개·닭·오리 사육시설은 200m 이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 ▲이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임상관찰 및 소독 상태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닭과 오리고기가 유통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1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장 소속 책임수의사는 닭·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운송된 가축은 하차 전 차량 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을 실시하며 하차 후에는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을 실시해 건강한 닭과 오리만 도축을 허용한다.

시 발생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인 경계지역내 사육되는 닭은 시·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출입이 허용된다.

특히 경계지역 오리는 시 혈청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다는 성적서를 제시해야 도축이 가능하고 비발생지역 농가는 계열업체 지정 수의사 또는 농가에서 선정한 공개업 수의사의 사전 검사를 거쳐 발급된 예찰증명서를 소지해야 되며 가축을 실은 차량은 도축장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이동 통제소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계지역내 오리 도축장으로 지정된 곳은 화인코리아, 코리아팔도영농조합법인, 신촌자연오리, 정다운 등 모두 나주시에 네 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축산위생사업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파견돼 오리에 대한 임상관찰, 혈청검사 성적서, 농장에찰증명서,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 발생농장 가축과 3km 이내의 위험지역 가축은 살처분 매물, 이동제한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설사 바이러스에 오염됐더라도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서 섭씨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80℃에서 1분간 열처리하면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하면 안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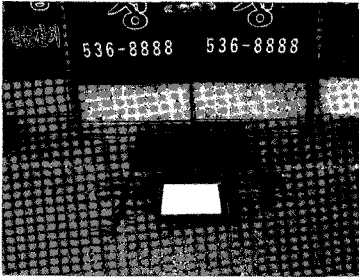
전라남도

▶ 닭·오리 도축 전 임상관찰 강화한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도축되기 전 닭·오리의



▶▶ 해남군, 다중이용시설 소독발판조 설치



를 설치했다.

군은 최근 야생조류와 전남·경기지역 닭·오리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 검출,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요 음식점과 숙박업소 입구에 소독발판조 120개를 긴급 투입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여 누리꾼이 뽑은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선정될 만큼 수많은 관광객들이 연중 방문하는 곳으로 구제역 등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청정해남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방역초소를 지난해까지 3개소에서 올해부터 8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민·관이 협력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 A 차단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해남군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는 방문객이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위생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개인별 앞접시·국자·집게 제공 등 남도 좋은 식단체 실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물 관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남군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고병원성 A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소독발판조를

전라북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월 11일까지 신청

전라북도는 한·미, 한·EU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희망농가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각 시·군 또는 읍·면·동을 통해 접수한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등록 농가로 한우는 기초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이며, 육우·돼지·닭·오리·젓소·흑염소·양육·꿀벌농가는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로 축산업 등록시 등록된 면적 범위내 지원 가능하며 지원대상 시설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으로 축사 및 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 사업 추진시 자동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A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 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 농가별 선정기준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 축사현대화사업 신청 기한 연장

제주도는 당초 1월 20일까지 받기로 했던 올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2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제주에선 이 사업으로 76농가가 101억6300만원의 지원혜택을 봤다. 지원기준은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이다.

융자는 연리 3%에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올해도 축종, 농가별로 수요를 조사해 농림수산물 품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축사 현대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질병 차단에 필요한 시설 신·개축, 개·보수를 통한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에서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전업농으로서 ▲한(육)우 5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흑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농가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육 50마리 이상, 꿀벌 100군 이상 사육농가도 신규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 제주도행 축산물 소포 접수 전면 중단 요청

제주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로 오는 축산물 소포 우편물의 접수를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제주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우체국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축산물 소포우편물 접수는 무기한 중단됐다.

접수가 안 되는 반입금지 소포우편물은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짚, 왕겨 등이다. 단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 타 시·도산 닭고기 반입 유통업체 적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반입이 전면 금지된 육지부 냉동 닭고기를 반입, 유통시키려한 '양심불량'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 10분께 시로 인해 반입이 금지된 타 시·도산 삼계탕용 가금육(냉동계육) 15kg들이 101박스(1,515kg)를 불법으로 반입, 유통하려한 OO업체를 적발했다. 반입된 닭고기는 다행히 AI 발생지에서 생산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제주항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심 냉동계육이 반입됐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도 방역당국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는 동시에 국가경찰 112지령센터에도 운송의심 차량에 대한 수배 조치를 취해 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자치경찰은 또 화북동 D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냉동탑차에서 반입금이 금지된 냉동계육 101박스(15kg)를 압수하고, 전량 폐기 처리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반입 금지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와 관련해 16건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연말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올 1월 1일부터 타 시·도산 닭·오리고기 등 가금류 및 알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